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허 훈 의원 외 31명

나. 의안번호 : 제1991호

다. 제출일자 : 2024. 8. 12.

라. 회부일자 : 2024. 8. 14.

2. 제안사유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및 청소년들의 불법 주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를 개별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의식 개선 등 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 나.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를 개별 또
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20. ~ 8. 24.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1) 보행자전거과-3174호(2024.8.27.)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청소년 이용자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사업의 수익자인 대여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장 또는 거치대를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해 주·정차위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하고자 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홍보토록 하고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대여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개별 및 공동으로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전교육 관련(안 제9조제1항제7호)

- 안 제9조제1항제7호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 내용 중 현행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청소년 등 개인형 이용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20대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율(32.4%)이 높은 실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청소년 등’으로 변경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도록 강조함과 동시

에 교육 및 홍보대상을 청소년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청소년 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2)

[Table 3] Traffic Accident Statistics by Age Group(2017~2022)

Classification	Age Group (Cases, %)							Total (Cases, %)
	Under 20s	20s	30s	40s	50s	60s	Over 70s	
Personal Mobility	1,900 (32.4)	1,881 (32.1)	859 (14.7)	550 (9.4)	348 (5.9)	166 (2.8)	156 (2.7)	5,860 (100.0)
Bicycle	6,038 (19.3)	3,095 (9.9)	2,404 (7.7)	3,215 (10.3)	5,114 (16.3)	5,472 (17.5)	5,974 (19.1)	31,312 (100.0)
Vehicles	25,541 (2.1)	158,388 (13.3)	185,758 (15.6)	222,796 (18.7)	288,535 (24.2)	222,584 (18.7)	88,578 (7.4)	1,192,180 (100.0)

Sourc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TAAS)

■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관련(안 제13조제3호)

- 안 제13조제3호는 현행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주차장·거치대의 개별·공동 설치·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관련 민원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개별 및 공동으로 거치대 설치를 통해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 문제해소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2024년 교통안전연구(제43권 제1호),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